

감 사 보 고 서

- 문학분야 자체·기획사업 추진실태 점검 -

2023.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3
III. 감사결과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8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9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문학분야 자체·기획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2. 감사 중점사항

- 기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공모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자체·기획사업의 내부통제를 점검함으로써 잠재위험 진단·식별 및 해결방안 모색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합법성·적정성 점검
 - 사업 관련 각종 용역,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실태 점검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2명) : AAA 과장(감사반장), BBB 대리

성명	업무분장
AAA	○ 감사총괄 ○ ☆☆☆☆사업 추진실태 점검
BBB	○ ★★★★★ 및 협력사업 추진실태 점검

- 감사기간

- ' 23.09.25.(월) ~ 10.13.(금) : 예비조사
- ' 23.10.16.(월) ~ 10.27.(금) : 실지감사 / 10일간
- ' 23.10.30.(월) ~ 12.26.(화) :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요구서 발송

4.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부
- 감사범위 : ' 20년~ ' 23년 현재 문학분야 자체·기획사업
 - 문학분야 자체·기획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및 실태
 -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5.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최종 확정
 -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및 조치부서의 의견 수렴 후 감사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 23. 12. 26(화) 점검결과 최종 확정

II. 감사대상 현황

1. ☆☆☆☆

- 개요 : 전국 규모의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
- 목적 : 새로운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과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 확산하는 한국 대표 문학축제의 장 마련
- 장소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 및 전국 문학 거점 등
- 추진체계



주요 프로그램('23년 기준)

구분	내용
전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공연 ○ 특강 및 축하공연
개막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선언 ○ 축하인사 ○ ☆☆☆☆ 프로그램 안내
☆☆☆☆ 스테이지	[기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행사 (강연, 대담, 북콘서트, 인터뷰 등) ○ 기획위원회/사무처/운영대행업체 기획·제작 [공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공모 (20건 내외 선정, 프로그램별 200만원 지급) ○ 대학로 및 전국 각지에서 프로그램 시행
유관기관 특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스테이지 - 전야제, 낭독회, 특집방송, 강연, 북토크 등
특별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연계 전시
폐막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공연 등

2. ★★★★★

- 개요 : 일반 국민들이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학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목적 : 청소년 예비작가, 신진 청년작가와 독자 등이 참여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 문학 프로그램 제공 및 확산
- 주요 프로그램('23년 기준)

구분		내용
문학집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온라인 문학배달 서비스 - 주 1회(매주 목요일) ★★★★★ 누리집 등을 통해 작품배달
문장의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주제로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 매주 1회 (매주 수요일) 업로드 - 대중 친화적인 문학향유 코너 개발
문장 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월간 문예매체 - 매월 1일 발간 - 작가들의 신작뿐 아니라 문학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특집, 에세이, 인터뷰 제공
청소년문학 프로그램	글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거점 청소년 창작공간 -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창작 및 소통 거점공간 제공
	문장 청소년문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학창작 시상제도 - 매월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중 연간 최고 작품을 뽑아 '문장청소년문학상' 수여
	글틴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오프라인 캠프 운영 (2박 3일) - 네트워크, 문학기행, 전시 관람, 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문학경험 제공
대외협력 프로그램	마로니에 여성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학인 발굴을 위한 행사
	소설가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집 발간을 앞둔 신진 소설가의 집필활동 공간 지원

Ⅲ. 감사결과

1. 총평

- 최근 기관의 자체·기획사업 추진의지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감사실은 기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공모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자체·기획사업의 내부통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잠재된 위험 진단·식별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기관의 대표적 자체·기획사업인 문학분야(☆☆☆☆, ★★★★★) 사업에 대하여 ○○○○부를 대상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의 관련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

-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 됨
 - ☆☆☆☆ 추진기구 설치·운영관련 규정·방침 미비
 -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 보조사업 준용 행정처리 불합리
 - ★★★★★ 문학분야 예술인 위촉 및 사례비 지급방식 부적정
 - ★★★★★ 협찬금품 관리 부적정
 - ★★★★★ 외부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 ☆☆☆☆('16년) 및 ★★★★★('05년) 사업이 시작 된 추진배경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과거 기관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요구 및 상급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촉박하게

사업이 추진·이관되면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개시되었는데, 이후 이에 대한 보완·보정없이 관성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특히 내부통제 관점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확인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서 기관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부서 소관업무이며 업무추진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조직문화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그러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조직구성원 모두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명)

총건수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9	-	99,000	-	-	2	1 (99,000)	-	1	1	4	-	2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부서
1	☆☆☆☆ 추진기구 설치·운영관련 규정·방침 미비	개선요구	☆☆☆☆ 추진기구 설치·운영관련 규정 제·개정	○○○○부
2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 보조사업 준용 행정처리 불합리	개선요구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한 ‘공모전’ 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정비	○○○○부
		통보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공모전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부
3	★★★★ 문학분야 예술인 위촉 및 사례비 지급방식 부적정	개선요구	★★★★ 위촉예술인들을 사업에 참여시킴에 있어서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부
		통보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예술가 (개인)에게 임의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를 점검, 업무절차를 정립	△△△△부
4	★★★★ 협찬금품 관리 부적정	부서주의	○○○○부가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	◇◇◇◇부
		시정요구	★★★★ 사업의 잔여 지류상품권 11장(99,000원 상당)을 양수하여 「예산회계규정」 등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	△△△△부
		개선요구	협찬업무 관련규정 및 지침 제·개정	□□□□부
5	★★★★ 외부저장장치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보안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	○○○○부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별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 추진기구 설치·운영관련 규정·방침 미비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부는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문학인·향유자·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인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는 매년 ☆☆☆☆ 추진을 위해 내부기안 <☆☆☆☆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조직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추진기구’)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모든 조직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술위는 정관 제27조에서 예술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부는 별도의 규정 제정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이 「위임 전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한 사무처리로써 <☆☆☆☆ 기본계획> 등의 위원장의 승인으로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추진기구의 위원 위촉 및 연간 운영계획 등을 소관부서 본부장 전결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위 정관에서 정함과 어긋남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① 추진기구 위원 활동에 대한 사례비 지급근거 불합리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비목별 지침에서 ‘일반수용비’와 관련한 조문을 살펴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 추진기구는 법령 등에 의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임의기구이므로 ○○○○부가 추진기구에서 활동하는 외부위원들에 대하여 예산통제부서의 협조를 받은 내부기안만을 근거로 회의참석,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불합리가 있다.

②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권한 행사 및 책임의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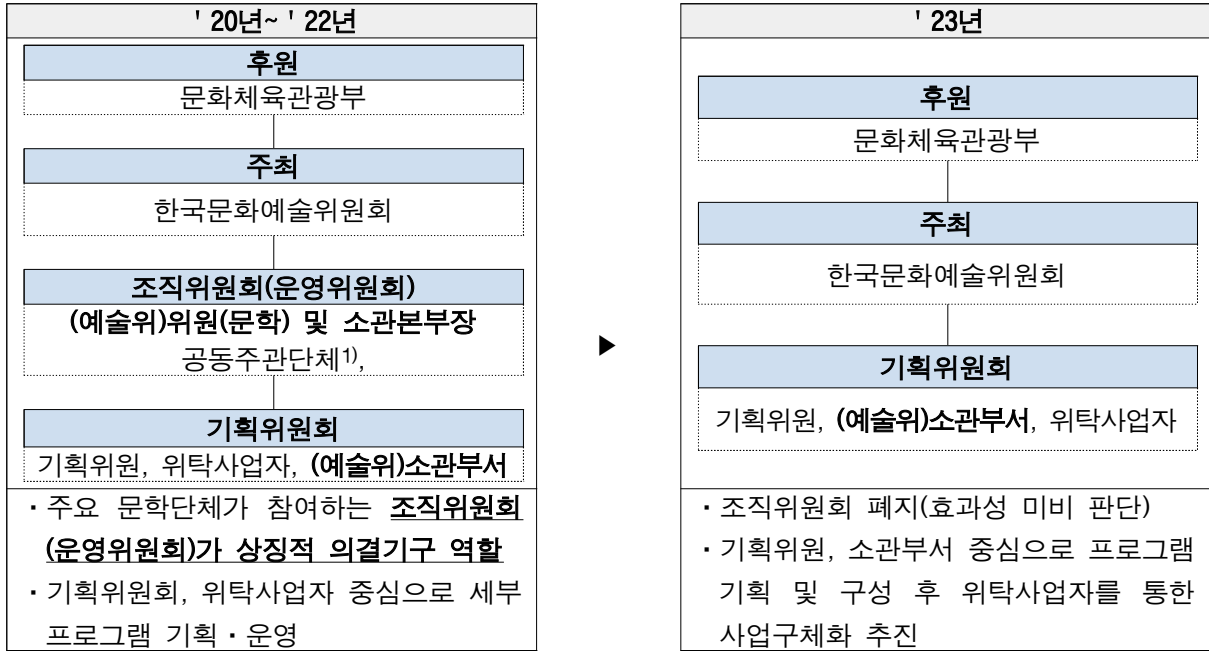
○○○○부는 추진기구에게 ‘☆☆☆☆ 행사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 ‘☆☆☆☆ 스테이지 기획 및 공모작 심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진기구는 임의기구이므로 행정권한이 없다.

예술위는 ☆☆☆☆ 사업 운영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다른 별표 제2호에서 중요사항은 본부장, 일반사항은 부서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추진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내부결재를 거쳐 전결권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즉, ☆☆☆☆ 사업추진 및 실행함에 있어서 추진기구의 의사결정은 상징적이며, 최종적인 권한행사와 책임은 ☆☆☆☆ 소관 부서장 및 본부장에게 실무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 사업담당자는 “ ' 22년까지 조직위원회(운영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였지만, ' 22년 ☆☆☆☆ 평가 워크숍에서 주요 문학단체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에 참여하는 작가 섭외 및 행사 홍보에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부 프로그램 선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 23년부터는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운영체계를 수립” 하였다고 [표1]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런데 ☆☆☆☆ 추진기구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 20년 ~ ' 22년에는 소관 부서장 및 본부장이 실무적 위계에 맞게 층위를 나누어 의결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상징적 의결과 실무적 의결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었으나, ' 23년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소정의 사유로 ☆☆☆☆의 운영체계가 변경되면서 소관 본부장이 구성원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으로써 추진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부장에게 사후보고 되는 형태로 업무가 처리되는 등 상징적 의결과 실무적 의결에 시차가 발생되고 있어 ☆☆☆☆ 사업추진 및 실행을 위한 권한 행사는 부서장 중심으로, 책임은 본부장 중심으로 부과되는 등의 행정권한 부여의 불합리가 있다.

[표1] 연도별 ☆☆☆☆ 운영체계



관계부서 의견 및 판단

○○○○부는 ☆☆☆☆ 추진기구 위원들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자문회의 사례비’ 및 ‘조사분석 사례비’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사업추진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 행사 및 책임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 23년에 의결기구의 회의횟수가 15회로 기존대비 약 3배가량 증대되면서 매년 회의참석이 어려운 본부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것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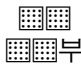

또한 ☆☆☆☆ 추진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통해 위원장 승인을 득하여 구성한 기구이므로 정관과 어긋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예술 현장과의 협력추진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도 같은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문학관련 유관기관의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

그러나 ☆☆☆☆ 추진기구는 변칙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임의기구’로서, 현재와 같은 방식은 기관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기관의 미션 또는 사업의 목적과 별개로 사익을 위한 행위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위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 심의 등과 관련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표2]와 같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조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 추진기구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화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 우려하는 ‘예술현장과의 협력추진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을 해칠 위험성’은 근거 없다.

[표2] 예술위 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및 내용

규정	기구명	담당	구성	임기	주요 자문사항(기능)
공연장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부	8명 내외	1년	· 공연장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공연장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 사업 추진
미술관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부	5명 내외	1년	·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미술관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 사업 추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부	5명 내외	2년	· 한국관 운영 자문 ·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위원 후보자 추천 · 미술전 및 건축전 예술감독 선정계획 자문
예술가의집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부	5명 내외	1년	· 예술가의집 운영의 기본 방향 · 예술가의집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정기대관 심의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부	7명 내외	1년	· 개발원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 개발원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교육훈련 및 사업 추진
아르코예술 기록원 운영규정	운영자문 위원회	 원	7명 내외	1년	· 기록원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 자료 수집 및 수집자료 평가 · 기획전시 등 자료 활용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추진기구 설치·운영이 상위법과 예술위 정관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 통 보

제 목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 보조사업 준용 행정처리 불합리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부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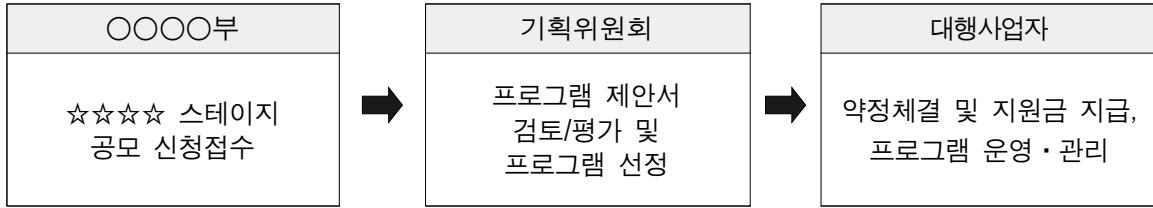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부는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문학인·향유자·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인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 전국 규모 국민 참여형 연례 문학축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문학진흥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자 또는 독자와 소통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 및 선정하여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소정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이하 ‘스테이지 공모형’)’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3]과 같이, ○○○○부는 ‘스테이지 공모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 기획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가 실시하며, 대행사업자는 이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 및 개인과 약정을 체결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표3] ☆☆☆☆ 스테이지 공모형 추진체계



2. 판단기준

☆☆☆☆ 스테이지 공모형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모전3’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운영 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선정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준거하여 매년 수립되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심의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확정, 정보 공개 등을 실시한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4)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2) '22년 5월 기존의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 발표, '22. 8. 10. 시행

3)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 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4) 『국가재정법』 별표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예술위도 해당함

는 국고보조금을 부담금, 급부금, 장려비, 위탁금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예산서의 비목으로 보조금을 분류하는데,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해외경상이전(340-01), 해외자본이전(340-03) 등의 비목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기관의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 사업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규정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 보조사업과 차별화되는 ‘자체사업’이며, ☆☆☆☆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테이지 공모형의 경우 형태적으로는 예술위가 공모·심사하여 선정된 개인 및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 예술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개인 및 단체와 약정체결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대행사업자이며, 지원금의 성격도 예술위에서 대행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금의 일부이므로 위에서 언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는 스테이지 공모형을 추진하면서, 자체사업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에 따라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심의진행 가이드라인> 등의 일부를 차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업담당자가 사업 참여 단체에게 「보조금 관리운영규정」 등을 적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체사업인 스테이지 공모형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 심의 시 사용되는 행정양식(사례비 지급 영수증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모안내 및 결과발표를 실시함에 있어 타 보조사업과 형태적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사업관련자 및 응모자들에게 스테이지 공모형이 보조사업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 공정성 시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은 ‘공모전’의 형태로 추진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① ☆☆☆☆ 스테이지 공모형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한 ‘공모전’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라며,

[(행정상)개선]

② 기관의 경영기획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로 하여금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공모전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 통 보

제 목 ★★★★★ 문학분야 예술인 위촉 및 사례비 지급방식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문장(munjang.or.kr)’을 중심으로 ★★★★★ 사업을 추진하면서, ★★★★★ 사업은 ‘문학집배원’, ‘문장의소리’, ‘문장웹진’, ‘글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부는 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4]와 같이 프로그램별로 문학분야 예술인을 위촉(이하 ‘위촉예술인’)하고 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 사업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표4] ★★★★★ 문학분야 위촉예술인 역할 및 주요활동

프로그램	역할	주요활동
문학집배원	· 문학집배원	· ★★★★★ 홍보채널에 배포되는 문학작품 선정 및 작품 해설 작성
문장의소리	· 연출 · 진행 · 구성작가	· 인터넷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문장웹진	· 편집위원 · 청년작가	· 웹진 제작을 위한 원고청탁, 콘텐츠 검토 및 검수 등
글틴	· 멘토	· ★★★★★ 창작게시판의 청소년 작품에 대하여 지도·편달

2.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비목별 지침 가운데 ‘일반수용비’를 살펴보면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서 ★★★★★ 사업 위촉예술인들에 대한 사례비 지급단가를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그리고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부는 위촉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하여 ★★★★★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례비 지급 단가 책정에 대한 관련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촉예술인들과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 사업이 '05년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했을 때, 위촉예술인 활동에 대한 사례비의 단가기준 및 지급방식 등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는 확인되지만, 『예술인복지법』이 '16년에 제정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행정절차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부가 ★★★★★ 사업과 관련하여 위촉예술인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가 보완 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 위촉예술인들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자문과 기획활동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협약서를 위촉예술인과 상호 간에 체결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와 같이 <예술인복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비한 사항이 상존함은 인정하며 향후 협약서에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를 준용하여 ①위촉예술인 활동 사례비 금액 ②활동기간 및 연임, 변경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③위촉예술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④활동과업 내용, 범위에 관한 사항 ⑤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⑥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 위촉예술인들을 사업에 참여시킴에 있어서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상)개선]**
- ② 기관의 계약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로 하여금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예술가(개인)에게 임의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를 점검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부 서 주 의 · 시 정 요 구 · 개 선 요 구

제 목 ★★★★★ 협찬금품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부,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문장(munjang.or.kr)’을 중심으로 ★★★★★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장의소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장의소리’ 프로그램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서 매주 1회(수요일) 웹사이트, ♡♡♡, ♡♡♡♡, ♡♡ 오디오클립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는 ‘문장의소리’ 방송 시 협찬 문구 삽입을 조건으로 '22년 5월경 (주)◇◇◇◇◇로부터 9,000원 지류상품권 300매를 협찬받아, '22. 7. 11.부터 '23. 5. 9.까지 청취자 퀴즈 등 이벤트를 통한 시청자 증정 등으로 총 279매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2. 판단기준

「예산회계규정」 제148조에 따르면, 유형 및 무형자산의 취득·증여 등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모든 거래는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에 의하여 분개한 후 기장하여 항상 업무의 실태 및 수지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즉, 기관의 모든 수입·지출은 회계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동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의 안내자료를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고 받는 급부의 가치가 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며, 반대급부가 있는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으로써 ①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②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써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③협찬의 내용과 법 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홍보목적의 협찬으로 이벤트 등에 협찬회사의 문구가 들어가는 홍보가 이루어지는 사례의 통상적인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협찬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를 회계상 수익으로, 이후 물품지급시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부는 (주)◆◆◆◆◆로부터 지류상품권을 협찬받아 사용함에 있어 「예산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보고문서에 해당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정행위가 생략된 채 임의의 방식으로 처분하였다. 게다가 실지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소관부서에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감사 종료 이후인 '23. 12. 1. '2024 ■■■■■■ 사전 이벤트' 명목으로 지류상품권 10매를 행정개선의 노력없이 추가로 처분하는 등 이를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협찬받은 지류상품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담당자와 협찬업체 간의 직무연관성이 있지 않으므로, 사업담당자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예술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허용되는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기관운영 경향을 고려할 때, 기존의 기부금품과 달리 재정확보 등의 목적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협찬유치 활동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내부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협찬 등이 추진될 경우 사업담당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자산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재 규정으로는 자체사업이 부서단위에서 총괄하여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협찬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절차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내부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협찬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찬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부가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시기 바라며, **[부서주의]**
- ② 세입·세출 관리 등 회계업무 총괄부서인 △△△△부로 하여금 ★★★★★ 사업의 잔여 지류상품권 11장(99,000원 상당)을 양수하여 「예산회계규정」 등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시고, **[(재정상)시정]**
- ③ 제규정의 제정, 개폐 관리 담당부서인 □□□□부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증진 및 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해 임·직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협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시 정 요 구

제 목 ★★★★★ 보조기억매체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문장(munjang.or.kr)’을 중심으로 ★★★★★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표5] ★★★★★ 사업관련 보조기억매체 사용현황

보조기억매체	용도	실물사진
휴대용HDD(4TB)	★★★★ 산출물(영상/음원) 보관용	
휴대용HDD(2TB)	★★★★ 행정 산출물 보관용	
휴대용HDD(2TB)	2020년도 문학 OnStage 사업 산출물 보관용	

2. 판단기준

「정보시스템보안지침」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기억매체는 소관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점검대장에 확인·서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4조에 따라 각 보조기억매체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에 맞게 라벨을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부는 보조기억매체와 관련한 관리대장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의 양식의 라벨을 기입·표시 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안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보조기억매체 「정보시스템보안지침」을 준용하여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일반용)을 비치, 월 1회 이상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확인·서명토록 하겠으며, 일반용 보조기억매체 관리요령에 따라 별도의 캐비닛 보관 및 보조기억 매체 라벨 표기, 관리번호 기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장은 앞으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시스템보안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안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시정]